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8898(2026.09.17.~2028.08.31.)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 상품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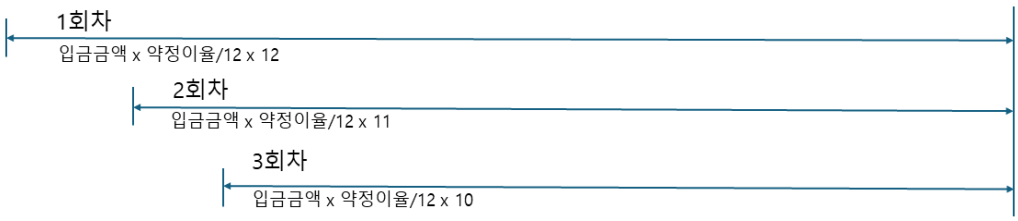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기본정보

최고금리	**연 3.1%**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은 상품설명서 확인 - 정부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26.09.15 세금납부 전 기준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주택청약상품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에 한함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만 납입 가능		
최저가입금액	**2만원**	**최고가입금액**	**매월 50만원 이하**
일부인출	**X**	▸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예금담보대출	○	▸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예금자보호	**해당사항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합니다.	

▸ 유의사항

※ 상품 관련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상품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우리은행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1599-0800,**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이자계산방법	▸ 입금건별로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해지 시 지급 ※ 가입기간 1년, 3회차 납부 후 해지 예시 
예금만기	▸ 창구 방문 및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해지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아래 표참조)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만원)

구 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가입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에 한함.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
저축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잔액 1,500만원까지 월 한도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납입기간·적용이율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 □ 적용이율 : **2026년 09월 15일 현재**, 세금공제 전 단,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1.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 2.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 3.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1%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적용**
전환신규	□ 기존「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은행간 전환 가능)

	□ 국민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가입기간만 인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환원금 전액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의 해당일로 변경됨 □ 전환신규 시 **다음달 납입분부터 국민주택 납입회차로 인정**되며, 약정납입일 이전에 전환해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당월(전환해지 월)분 회차는 국민주택 납입회차로 인정되지 않음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청약 당첨계좌이거나 청약 접수 중인 경우 ② 전환을 위해 종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20영업일이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전환가입 신청 · 동의서'를 징구하고 전환신규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또는 사업상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 존 · 비속이 상해 ·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라.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압류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부활신규	□ 청약 당첨에 따른 해지 후 부활대상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당시의 잔액을 월 저축 한도에 관계없이 납입원금으로 예치하고 부활신규 처리 가능 □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입주 취소된 경우 당첨계좌의 해지 후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을 부활계좌에 합산 가능 ※ 부활대상 계좌의 저축취급기관은 합산대상 계좌의 저축취급기관이 발급한 납입내역확인서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납입내역 정보를 통해 합산할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합산함 ※ 당첨계좌의 해지 후 가입한 합산대상 계좌가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 합산이 불가하며 청약당첨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합산 처리하였으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 합산을 취소한다. 다만, 계좌부활 및 합산을 위하여 납입한 금액은 인출 불가함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이율은 적용하지 않고 저축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적용 □ 중도해지 시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
이자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지급), 단리식
세제혜택	□ 비과세로 가입 가능

<table>
<tr><td>소득공제</td><td>□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2]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 ·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2) (예) 2025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26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급등록 불가)

□ 공제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 내)의 40% (최대한도 120만원)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이 그 대상이며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기간 1.1~12.31 내 납입한 입금일 기준임)
※ 납입연도별 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
<table><tr><td>납입연도</td><td>납입금액 한도</td><td>소득공제 한도(40%)</td></tr><tr><td>2024년 이후</td><td>300만원</td><td>120만원</td></tr><tr><td>2015년~2023년</td><td>240만원</td><td>96만원</td></tr><tr><td>2009년~2014년</td><td>120만원</td><td>48만원</td></tr></table>
□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은행양식) (※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 가능)

□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① 또는 ②에 해당 할 경우 계좌 해지 시 추징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해지 시 (예외사항 : 사망, 해외 이주, 85㎡ 이하 주택당첨해지 등) 단,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통장 해지 시에는 추징 적용하지 않음
②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6% (지방소득세 별도)를 곱하여 추징

□ 유의사항 : 소득공제 대상자 자격상실 등 사유로 소득공제 대상자 해제를 원할 경우, 가입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해제 신청 필요

□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적용세율</td><td>□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
※ 세율은 2026.09.15.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부가혜택</td><td>□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청약자격 부여</td></tr>
<tr><td>계약의 해지</td><td>□ 영업점으로 방문 또는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우리WON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범죄 피해를 입증하고 해지 시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를 재입금하면 해당 계좌의 해지를 취소할 수 있음
- 경찰서에서 발급한 청약계좌해지 피해사실이 명시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결정)’. 단,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된 경우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로 ‘수사 결과 통지서(송치 결정)’를 갈음함
- 기타 해당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활합산대상 계좌의 해지 시 영업점 방문하여 해당 사유임을 밝히고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비대면 해지 시 합산 불가)</td></tr>
</table>

기 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합니다.
담보제공	가능	□ 본인 명의로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 가능 □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 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은 불가

3 유의 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 및 회차의 납입인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납입인정일=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횟수

□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이상** 납입해야 순위발생 하므로, **입금 시 회차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월 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또는 선납하실 경우 청약 순위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보다 늦게 납입하는 경우(지연),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납입하는 경우(선납)는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하나, 미리 납입한 금액은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해당 회차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된 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발생이 인정됩니다.)

※ 단, 1순위 산정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는 최대 2년/24회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납 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① 국민주택 : 세대주 아닌 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 민영주택 : 세대주 아닌 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순위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며, 가입기간 등 별도 자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가입시 인정기준

① 국민주택 청약 시

-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회차(납입한 회차가 24회 초과하는 경우 24회 인정)와 2024년 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회차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 인정되며, 60회 미만이면 해당 회차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로서 납입금액 중 회차별 금액(최고 25만원)이 많은 순으로 하여 회차 산정됩니다.

② 민영주택 청약 시

- 가점제 통장기간 산정 :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인정)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인정되며, 5년 미만이면 해당기간 인정됩니다.

■ **주택청약 관련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입금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만원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회차별 금액 산정 시 입금약정일이 2024년 10월 31일 이전인 경우 최고 10만원,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최고 25만원 한도로 적용함



□ 국민주택 청약(일반공급)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인정된 회차의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 순위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 청약권은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이 불가합니다.

■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좌부활

□ 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부활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나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 · 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②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④ 사업주체가 부부 동시당첨에 대한 특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7호)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⑤ 사전당첨자가 2024년 10월 1일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로서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로 한다)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계좌로서 해지하지 않고 거래 중인 계좌는 청약접수에 계속 사용 가능

■ 착오송금 반환

☐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송금한 경우

② 송금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송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금반환청구(당행 및 타행)를 신청하는 경우

☐ 은행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청구액에서 발생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① 착오송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당통장을 통한 청약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하는 경우로써 통장 잔액에서 반환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② 압류, 담보대출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이 불가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